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-2호

Apr. 2024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,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「금융부문 망분리 T/F」 1차 회의 개최 (4.12.) -

1.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'24.4.12.(금) **변화된 IT 환경을 감안**하여 관련 **규제 수준**에 대한 **종합적인 재검토**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「**금융부문 망분리 T/F**」**1차 회의를 개최**

2. 주요 내용

[1] 연구·개발 환경

- 최근 **인공지능(AI), 클라우드** 등 **신기술 기반**의 금융서비스 **개발**은 **인터넷 연결**을 통한 **오픈소스 활용**이 필수적이나, **망분리 규제**로 인해 **유연한 개발 환경**을 **구현**하기가 **곤란**
  - 특히 **금융권**은 타 분야와 달리 **물리적 망분리 규제**로 **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**가 **불가**함에 따라 **우수인력**의 **유출** 등의 **문제**도 있었으며, 금융회사가 **효율적인 개발 환경**을 **구축**하는 데 **애로**가 존재
- 이에 **금융 IT분야 연구·개발망**과 관련된 **애로사항 해소** 및 **IT 개발인력**의 **근무 환경 개선방안**을 모색할 예정

[2] 인공지능(AI) 활용

- ChatGPT 등 **생성형 AI 기술**을 통한 **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,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**임에 따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**상충**되는 **부분**이 존재
- 이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**내·외부 시스템간 연계** 및 **내부 업무처리 자동화** 등에 있어 **개선방안을 모색**할 계획

[3] SaaS 이용

- 최근 금융권에서는 **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**을 위해 **다양한 업무**에 **SaaS***를 **도입**하고자 하나, **망분리 규제** 등으로 인해 **SaaS를 이용하기 어려웠음**

  * Software as a Service(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: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- **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**을 고려하여 **SaaS 이용**을 통한 **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**을 촉진하면서도 **SaaS 이용**에 따라 **인터넷에 상시 연결**되는 데 따른 **보안 위험**을 고려한 **합리적 수준**의 **균형점**을 모색할 계획

[4]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

- 현행 규제에서는 **非전자금융거래업무**에 대해 **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** 사실상 **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**되고 있으며, 특히 **겸영전금업자**의 경우 **전자금융업무와 非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***하여 **망분리 규제 준수**에 **애로 존재**

  * 전자금융업은 겸업주의 특성상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만 각종 보안규제 등 적용 → 최근 금융-비금융 융합 가속화로 업무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수 발생

- 이에 **非전자금융거래업무**를 처리하는 **정보시스템**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**독립적으로 분리 구성·운영**하고, **망분리를 일부 완화**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

3. 향후 계획

- 망분리 T/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**상반기 중「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」을 마련**

(원문 링크)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2108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